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87

발의연월일: 2022. 11. 25.

발 의 자:권인숙·기동민·김병욱

김주영 · 김철민 · 도종환

서동용 • 유정주 • 이성만

이원욱 • 인재근 • 정춘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번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 등을 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 3조제6호의5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69조제1호 단서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5 및 제69 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파 면·해임되거나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제33조(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	
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6의4. (생 략)	1. ~ 6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
	정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그 형
	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제69조(당연퇴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	
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	
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u>.</u>
2. (현행과 같음)

2. (생략)